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유예 탄원서 제출 100만 인쇄인 생존 걸려, 유예기간 반드시 필요

지난 5월 31일부로 40여년간 시행해오던 '인쇄기준요금'제도가 전격 폐지된데 이어 일선 인쇄업체의 혼란과 일선 계약업무 현장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5월 31일부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제작업체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을 통해 폐지된 '인쇄기준요금'을 대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시장 자율 논리 내세웠으나 시장 혼란

조달청이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내세운 논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인쇄기준요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70년대와 달리 정부가 특정물품의 기준요금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조달청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5월의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여전히 인쇄기준요금을 예산편성 및 인쇄물 구매가격 결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서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기준요금’을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달청과 공정위에서 1만6천여개의 인쇄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결정은 경쟁 제한적인 역기능만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른 품목에서도 정부주도요금이 폐지되는 추세여서 ‘인쇄기준요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폐지로 가닥을 잡게된 것이었다.

특히, 조달청은 인쇄기준요금이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경우, 감사에 대한 부담과 예산절감 및 인쇄장비 발전을 이유로 그동안 ‘인쇄기준요금’의 하락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달청의 결정은 그동안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달청의 인쇄물 가격조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온 인쇄업계의 요구를 거절한 셈이 되었다. 또한 정부노임단가 및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한 인쇄업계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아쉬움과 범업계적인 대응을 숙제로 남겨 주었다.

##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인쇄기준요금’

‘인쇄기준요금’은 지난 1976년 10월에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인쇄물가격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977년부터 시행된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 해

마다 시중거래가격 조사 또는 원가계산에 따라 전년 대비 변동폭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 왔으며 조정된 인쇄요금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시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이후 인쇄기준요금은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상되더라도 2%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인쇄비 조정에 대하여 조달청과 인쇄업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이 발표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인쇄장비의 발달로 작업효율이 향상되어 인쇄비 하락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 인쇄업계는 고가 인쇄장비의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디자인(조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원부자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디자인이 인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커짐에 따라 획일적인 ‘인쇄기준요금’의 적용이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되어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조달청의 입장은 디자인작업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 저하,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제도의 폐지에도 절차와 설득 필요

특히, 2006년 이후 ‘인쇄기준요금’이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부 수요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시에 후보자에 대한 벽보발행 비용 산정시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인쇄기준요금을 원가계산자료로 활용토록 하는가 하면, 각 선관위의 투표용지, 선거용 책자 및 각종 홍보물 원가계산 시에도 이를 이용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매년 인쇄비 예산 편성시에 세부지침으로 활용해 왔으며 매년 발간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책자) 후반부에 기준요금을 적용, 수록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워,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했다. 주요 기준으로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인쇄물의 기초금액을 책정할 때, 거래실례가격, 세부견적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구매(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최근 구매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키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활용키로 했으며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 판단 후 결정할 방침이었다.

### 완벽한 제도 없어, 보완과 업계 입장 청취는 당연한 절차

지난 5월 ‘인쇄기준요금’의 폐지가 결정되자, 일선 인쇄인들의 대부분은 가격의 하락을 점쳤다. 상식적으로야 정상적 수준에서 견적을 내겠지만, 경영의 한계 상황에 몰린 일부업체들은 일단 일감을 맡겠다는 절박함에 정상적인 이윤은 물론 소요 비용조차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인 견적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였으며, 이미 이런 우려는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5월 이후 발주한 관공서 및 지자체의 인쇄물 발주에서 가격파괴가 아니라 자기파괴적인 수준의 최저가를 터뜨린 일부업체들의 수주가 이어졌고, 앞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주가 이뤄질 경우에는 도저히 정부 및 공공관련 인쇄물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쇄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비롯,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각 인쇄단체들은 ‘인쇄기준요금’의 폐지를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유예시켜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나섰다. 어느 제도이든간에 그 목적은 해당 업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이지 되어야지, 그 업종을 위축시키고 업체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쇄업계가 범업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다. ◎

# 탄 원 서

시행일자 : 2011.10.12

수 신 : 대통령 귀하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유예 건의

1. 공정사회 구현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2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본회 산하 전국 11개 지방 회원조합을 두고 있으며, 전국 2만여 중소인쇄업체와 70만 인쇄인들의 구심점으로 우리나라 인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인쇄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력이 열악한 영세한 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된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 · 부자재 가격까지 급등하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는 물품 중 “인쇄물”의 경우 각급 공공기관이 조달청에서 발표해 온 “인쇄기준요금”을 기준으로 관련 예산편성 및 원가산출을 해 왔으나, 조달청이 시장경제원칙 및 인쇄물 구매 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이유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전 예고 없이 40여년간 시행해 오던 “인쇄기준요금” 제도를 2011년 5월 31일부로 전격 폐지함에 따라 업계의 혼란과 일선 계약업무 현장에서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 우리 업계에서는 그 동안 조달청의 요청으로 “인쇄기준요금” 책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업체 실태조사와 자체 예산을 들여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인쇄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40여년간 시행해 오던 등 제도를 업계에서 준비할 최소한의 기간도 없이 전격 폐지, 공고 한 것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자세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우리 업계에서는 조달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조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인쇄조합 이사장들이 국장, 청장과 2회 면담하는 등 우리 인쇄업계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인쇄기준요금 폐지 유예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부득이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오니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인쇄산업의 특성과 “인쇄기준요금”이 지난 40여 년간 적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시어 업체들이 제도변경에 따른 준비 및 적응 기간과 우리 업계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향후 3년간 만이라도 유예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계시기를 앙망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